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082
----------	-------

발의연월일 : 2023. 10. 10.

발 의 자 : 권은희 · 조경태 · 최연숙
이태규 · 도종환 · 김철민
서동용 · 강민정 · 설 훈
김영호 · 강득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 관한 特別法」은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교원(이하 “임용제외교원”이라 함)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률로서, 1999년 제정된 후 2013년에 폐지되었음.

그런데 임용제외교원들의 경우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상당 기간 동안 호봉, 연금 등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는 조치들이 동 법률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못한 채 법률이 폐지되어 이들의 기본권 침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용제외교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후속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 관한特
別法」에 의해 특별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을 임
용제외교원으로 정의하고, 임용제외교원이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기
간을 임용제외기간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국가는 임용제외교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조치로 임용제외교원의
피해 기간을 교원이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고,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직
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에 반영함(안 제5조 및 제6조).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時局事件 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 관한特別法」에 따른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들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 사범대학”이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 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말한다.
2. “임용제외교원”이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종전의 「時局事件 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 관한特別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기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한 특별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도

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국사건(이하 “시국사
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된 자

나. 가목의 기간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졸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다. 1989년 7월 24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
절차를 이행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되지 못한 자

3. “임용제외기간”이란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용제외교원의 경
우에는 1990년 9월 1일부터 이후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
간

나.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임용제외교원의 경우에는 교사임용후보
자명부에 등재된 시점의 다음 학기 시작일부터 이후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간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임용제외교원들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용제외교원들의 호봉·연금 등의 불이익
해소와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
하여 적용한다.

제5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외기간은 승진

및 호봉 확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임용제외교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② 임용제외교원 중 이미 퇴직한 교원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하며, 재직기간 합산으로 발생하는 미납기여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7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 또는 산입의 방법, 신청 절차 및 퇴직급여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